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4 - 43 - 157호(사건번호 : 201407조사018)

안 건 명 (주)티비이엔엠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티비이엔엠(대표 임우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롯데아이티캐슬 2동 1208호

의결연월일 2014. 9.24

주 문

1. 피심인은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dpop.com) 공표 문안 >

제목	(주)티비이엔엠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내용	저희 회사((주)티비이엔엠)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1월부터 6월까지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지를 제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주)티비이엔엠 대표이사 ○○○

3. 피심인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결제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업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15,7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 웹사이트(www.pdpop.com)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 '14. 1월부터 6월까지 휴대폰 자동정액(자동결제) 서비스를 신청한 15,305명의 회원에게 신청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실제 결제는 30일마다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한 번 신청하면 최소 3회 이상 결제가 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고,
 - 최초 결제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결제내역” 메뉴에서 “해지하기” 버튼을 생성하도록 설정하여, 3개월 이전에는 회원이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법성 판단

- 휴대폰 자동정액(자동결제)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에게 신청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실제 결제는 30일마다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한 번 신청하면 최소 3회 이상 결제가 되도록 하고, 최초 결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하기” 버튼을 생성하도록 설정하여, 3개월 이전에는 회원이 해지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 나목 - 제5호에 해당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 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4)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 5)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dpop.com) 공표 문안 >

제목	(주)티비이엔엠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내용	저희 회사((주)티비이엔엠)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1월부터 6월까지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지를 제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주)티비이엔엠 대표이사 ○○○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요청하는 결제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업무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부과상한액 및 부과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부과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8호)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8억원이다.

< 부과기준금액 >

위반의 고의성, 피해의 정도 및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3억원 이하로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기준금액은 매출액 8,926백만원의 0.2%인 1,785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부과기준금액에 대해 위반기간, 조사거부 또는 방해, 증거 인멸 조작, 위반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므로 부과기준금액에 10%를 가산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서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1,570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 9.2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